

용도세율 전용물품,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

- 관세청, 7월 11부터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 시행
- ‘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’ 도입,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

□ 관세청은 ‘용도세율*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’ 신설,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하여 7월 11일 (금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통관 이후 특정 용도(예: 반도체 제조용, 사료용 등)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,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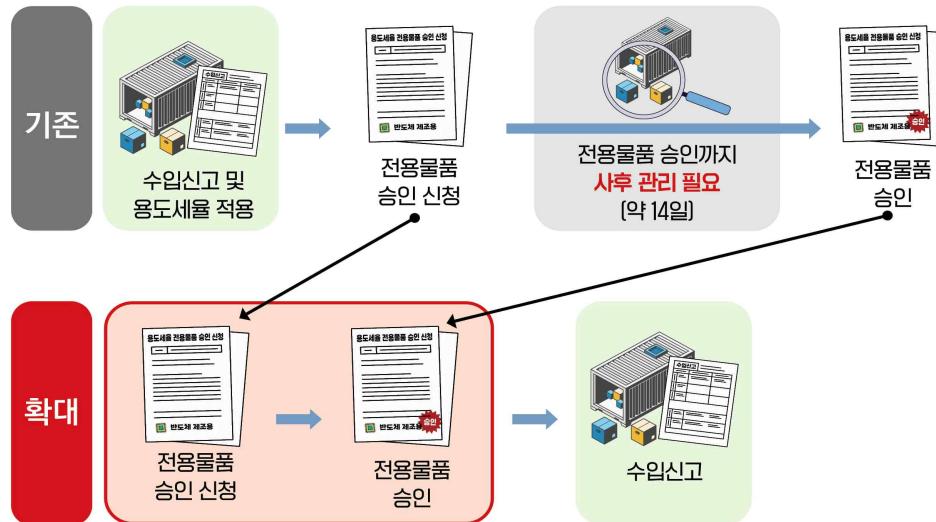
○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·관리하는 것이다.

○ 다만 수입 물품이 ①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‘용도세율 전용물품’으로 인정되거나, ②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.

□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하였다.

① 먼저, ‘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’를 신설했다. 이는 국무조정실 ‘민생 규제 개선 방안 과제’의 일환으로, ‘용도세율 전용물품’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.

< 용도세울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전후 비교 >



-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울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하며,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 대장 기록,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 의무를 부담했다.
- 앞으로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어,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② 다음으로,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을 완화했다. 이는 물가 상승분*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, 용도세울 적용 물품에 대한 금액 기준은 현행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 원 미만에서 1천5백만 원 미만으로 50% 상향된다.

* 수입무역지수(국가통계포털): ('16.1월) 93.46 → ('20, 기준연도) 100 → ('25.1.월) 145.22

<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상향 상세내역 >

구분	대상물품	품목	종류	금액기준	
				현행	개선
사후관리 생략	용도세울 (법 §83)	84류 ~ 97류	제한없음	품목당 과세가격 1,000만원 미만	품목당 과세가격 1,500만원 미만
	감면 (법 §89*, §90**)		원재료, 부분품 및 견본품		
사후관리 생략신청 가능***	감면 (법 §90)	1류 ~ 83류	원재료,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내 사용될 것 인정	품목당 과세가격 2,000만원 미만	품목당 과세가격 3,000만원 미만
		84류 ~ 97류		품목당 과세가격 1,000만원 이상 2,000만원 미만	품목당 과세가격 1,500만원 이상 3,000만원 미만

* 반도체제조용장비 감면 / ** 학술연구용품 감면 / *** '원재료 사용계획서'를 제출받아 심사

-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현실화되면서, 기업들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 저가 물품을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.

※ '사후관리 생략' 건수 1,194건, '생략신청 가능' 건수 1,222건 증가 예상(연간 기준, 추정치)

-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“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며,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
- “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.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주요 개정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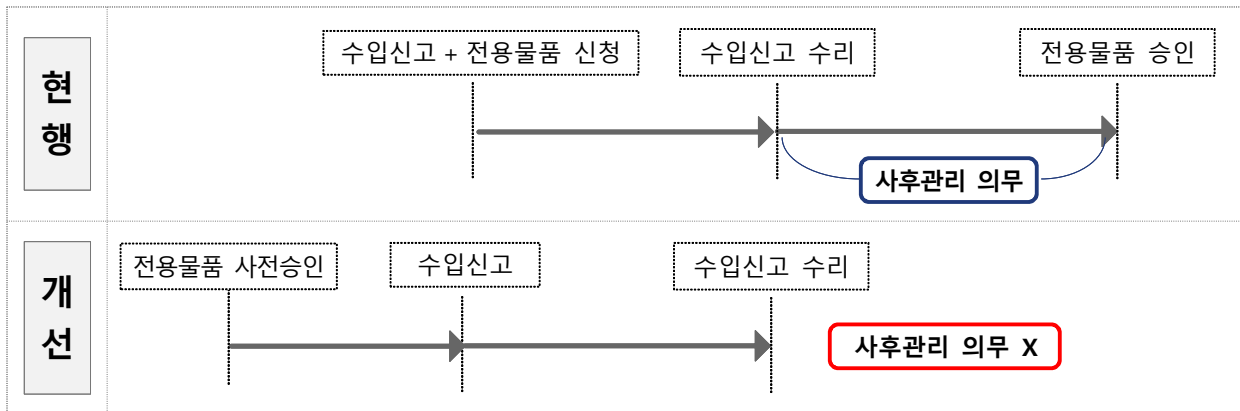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	책임자	팀 장	윤지혜 (042-481-7880)
		담당자	사무관	심성훈 (042-481-7984)



가.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절차 마련 (§10)

-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기 이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업체 편의를 제고
-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전용물품 승인 시까지 발생하는 사후관리 의무* 이행 절차 생략 가능

* 관리대장 비치·기록, 설치장소 변경 신고, 양·수도 승인 의무 등



나. 사후관리 생략(신청 가능) 물품 금액 기준 상향 (§3, §31, 별표 2)

- 최근 수입물가 상승을 반영하여, 용도세율 또는 감면 적용 물품 중 사후관리를 생략하거나 생략신청 가능한 물품*의 금액 기준을 상향

*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로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, 학술연구용 원부자재 등은 사후관리를 생략하거나 생략 신청할 수 있도록 함

-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은 '14.7.1. 개정된 이후 현행 유지하였으나 수입무역지수의 상승 추세*를 고려, 고시상 사후관리 면제 금액 기준을 50% 상향하여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을 경감

* 수입무역지수(국가통계포털): ('16.1월) 93.46 → ('20, 기준연도) 100 → ('25.1.월) 145.22

구분	대상물품	품목	종류	금액기준	
				현행	개선
사후관리 생략	용도세울 (법 §83)	84류 ~ 97류	제한없음	품목당 과세가격 1,000만원 미만	품목당 과세가격 1,500만원 미만
	감면 (법 §89*, §90**)		원재료, 부분품 및 견본품		
사후관리 생략신청 가능***	감면 (법 §90)	1류 ~ 83류	원재료,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내 사용될 것 인정	품목당 과세가격 2,000만원 미만	품목당 과세가격 3,000만원 미만
		84류 ~ 97류		품목당 과세가격 1,000만원 이상 2,000만원 미만	품목당 과세가격 1,500만원 이상 3,000만원 미만

* 반도체제조용장비 감면 / ** 학술연구용품 감면 / *** '원재료 사용계획서'를 제출받아 심사

다. 사후관리물품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명확화(§23)

- 사후관리물품 확인(서면 또는 현지)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고, 이상이 없더라도 업체의 신청 시 세관장이 확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

라.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감면물품 사후관리세관 변경 등(§3)

-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(해저광물자원개발)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세관을 현행 통관지 세관에서 감면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점검이 용이한 관할지 세관*으로 변경하고, 사후관리 사항도 같은 법 타 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물품과 동일시킴

* 사후관리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

마. 사후관리업무 위탁 취소 근거 추가(§25)

- 사후관리업무 위탁* 취소 사유에 ①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의사를 철회하거나, ② 수탁기관의 직제 변경 등으로 용도세울의 적용 또는 감면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지 않게 된 경우를 포함

* (관세법 §108)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 가능

바. 사후관리 위탁 대상 및 근거 명확화(별표 6)

- ‘채유 및 탈지대두박용’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대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후관리 위탁된 물품임을 고시에 명확히 규정
- 수입추천기관 위탁물품을 ‘수입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’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

< (별표 6) 농림부 사후관리 위탁 대상물품 개정(안) >

현행	개정(안)
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 (버섯재배용 포함)으로 수입하는 원료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	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, 버섯재배용,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으로 수입하는 원료와 시장 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. 단, 수입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한 물품에 한정한다.

사. 사후관리업무 종결 사유 추가(§32)

- 물품의 관세율 구분 또는 품목번호의 변경에 따라 해당 물품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이 사후관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

아. 他 고시 개정사항 반영(§12)

-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

자. 그 밖의 개정 사항

-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(신청)서에 사용(설치) 장소 추가(별지 1)
- 단서를 분리하여 조문 체계 간소화, 조항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 이동 및 인용조항 등 정비
-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행정조사 절차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「행정조사기본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